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4. 6 선고 2019가단12416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3. 23.

판 결 선 고 2021. 4. 6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17. 4. 21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,841,3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6,841,3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주식회사 D 대여금채권의 양수 및 지급명령 확정

- 1) 주식회사 D은 2016. 1. 7. C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19. 1. 7.,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 각 34.9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- 2) 위 회사는 2018. 5. 25.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(이하 ‘이 사건 제1채권’이라 한다)을 양도하고, 2018. 6. 15.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
- 3)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채권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666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. 같은 법원은 2018. 9. 12. C에 대하여 원고에게 7,991,543원 및 그 중 5,886,500원에 대하여 2018. 7. 2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18. 9. 14. 그 정본이 C에게 송달되어 2018. 9. 29. 확정되었다.

나. 주식회사 E 대여금채권의 양수 및 지급명령 확정

- 1) 주식회사 E는 2016. 1. 6. C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36개월,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.9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- 2) 위 회사는 2017. 10. 23.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(이하 ‘이 사건 제2채권’이라 하고, 이 사건 제1, 2채권을 합하여 ‘이 사건 각 채권’이라 한다)을 양도하고, 2017. 11. 8.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
- 3)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채권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7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. 같은 법원은 2018. 2. 6. C에 대하여 원고에게 3,418,569원 및 그 중 2,892,996원에 대하여 2018. 1. 18.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18. 4. 20. 그 정본이 C에게 송달되어 2018. 5. 5. 확정되었다.

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

- 1) C의 아버지 F는 2017. 3. 4. 사망하였고, 배우자인 피고가 3/9, 자녀들인 C, G, H가 각 2/9의 상속분에 따라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
 - 2) F의 상속인들은 2017. 4. 21.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 - 3)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.
- 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, 이하 같다), 갑 제5 내지 7호증,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이를 소유하기로 하였는바,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C 상속지분인 2/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,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원상회복의 방법

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

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).

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인 2017. 5. 17. 채권최고액 120,000,000원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.

라.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

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. 2.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48,000,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그 중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32,888,888원(= 148,000,000원 x 상속지분 2/9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.

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2020. 4. 27. 기준으로 합계 17,350,421원[= 이 사건 제1채권의 원리금 11,633,157원(= 원금 5,886,500원 + 2018. 7. 20.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,105,043원 + 2018. 7. 21.부터 2020. 4. 27.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,641,614원(= 원금 5,886,500원 x 647일/365일 x 34.9%)) + 이 사건 제2채권의 원리금 5,717,264원(= 원금 2,892,569원 + 2018. 1. 17.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525,573원 + 2018. 1. 18.부터 2020. 4. 27.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,298,695원(= 원금 2,892,996원 x 831일/365일 x 34.9%))]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.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C 상속지분 상당인 32,888,888원을 한도로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16,841,349원(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상 17,350,421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)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상당 배상금 16,841,3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재은

부동산 목록

[1동의 건물의 표시]

부산 북구 J에 있는 K아파트 L동

[도로명주소] 부산 북구 M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5층 공동주택(아파트)

1층 내지 3층 각 1078.11㎡

4층 내지 17층 각 1056.27㎡

18층 내지 22층 각 911.93㎡

23층 822.53㎡

24층 707.67㎡

25층 507.91㎡

지하1층 1042.05㎡

부속

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집회실 및 관리실

1층 82.50㎡

2층 78.90㎡

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노인정

1층 및 2층 각 58.60㎡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차장 및 경비실

1층 26.75㎡

지하1층 1029.00㎡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차장 및 경비실

1층 27.02㎡

지하1층 1118.90㎡

지하2층 1185.70㎡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차장 및 전기실, 펌프실

1층 13.13㎡

지하1층 806.19㎡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

1층 17.28㎡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제10층 N호 철근콘크리트조 72.00㎡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1. 부산 북구 J 대 19467㎡

[대지권의 표시]

1 소유권대지권 19467000분의 42783 끝.